

손해평가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위반에 따른 손해평가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손해평가사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4명

예정된 처분의 제목	「농어업재해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당사자	성 명	김○완	자격번호	18****
	주 소	경기도 김포시(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당사자가 2025년 7월 28일 참여한 (적과전종합) 착과수조사와 2025년 11월 9일 참여한 콩수확량 표본조사에 대한 검증조사 결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위반이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1회 위반에 따른 경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0, 별표2의4			

예정된 처분의 제목	「농어업재해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당사자	성 명	박○경	자격번호	21****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당사자가 2024년 5월 26일 참여한 양파수확량 표본조사와 2025년 7월 8일 참여한 (적과전종합) 착과수조사, 2025년 11월 8일 참여한 콩수확량 표본조사에 대한 검증조사 결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위반이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1회 위반에 따른 경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0, 별표2의4			

예정된 처분의 제목	「농어업재해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당사자	성 명	손○복	자격번호	15****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당사자가 2025년 5월 31일 참여한 양파수확량 표본조사와 2025년 7월 5일 참여한 (적과전종합) 착과수조사에 대한 검증조사 결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위반이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1회 위반에 따른 경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0, 별표2의4			

예정된 처분의 제목	「농어업재해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당사자	성 명	원○성	자격번호	18****
	주 소	경기도 양주시(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당사자가 2024년 10월 31일 참여한 콩수확량 표본조사와 2025년 10월 17일 참여한 벼수확량 표본조사에 대한 검증조사 결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위반이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1회 위반에 따른 경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0, 별표2의4			

4. 의견 제출처 및 제출기한

1) 제출처

-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전자우편주소) hongbogi@korea.kr
- (전화번호) 044-201-2832/2833
- (팩스번호) 044-866-9452

2) 제출기한: 2026년 9월 11일까지

5.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당사자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